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068

발의연월일: 2023. 2. 17.

발 의 자: 박상혁 · 어기구 · 이정문

최인호 · 임종성 · 김정호

김민기 • 송옥주 • 김윤덕

박성준 · 김병욱 · 최종윤

홍기원 • 조오석 • 민형배

진성준 • 한준호 • 김수흥

홍성국・허 영・윤후덕

의원(2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로 하여금 자동차와 부품자기인증제를 실시하는 자동차부품(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 13개 지정)에 대하여 자동차는 자동차 제조사만, 부품자기인증제도를시행하는 부품은 부품제조사만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는 전기차에 장착된 구동용 배터리 특히 배터리 구성품 중 하나인 셀에서 화재가 발생되고 있어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 및 그 주요부품 제조사에 대한 제작결함 조 사를 강화하여 전기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이에 성능시험대행자가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 및 그 주요부품 제조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작결함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에 대한 제작 결함조사를 할 때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용 배터리 및 그 주요부품 제조사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제14항 신설).
- 나.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에 대한 제작 결함조사를 할 때 필요한 자료를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용 배터리 및 그 주요부품 제조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제4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6. "구동축전지"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를 말한다.

제3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7(핵심장치등의 안전성확인) 자동차제작자등 및 부품제작자등 (이하 "자동차 및 부품 제작자등"이라 한다)은 제30조 및 제30조의2에도 불구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핵심장치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각각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등"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확인(이하 "안전성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한다.

제31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의7에 따라 안전성확인을 받은 핵심장 치등 또는 구동축전지의 주요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한 조사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33조제4항 중 "부품제작자등"을 각각 "부품제작자등(핵심장치등을 포함한 모든 부품의 제작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의5. (생 략)	1. ~ 1의5. (현행과 같음)
<u><신 설></u>	1의6. "구동축전지"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
	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
	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
	에너지 저장매체를 말한다.
2. ~ 14. (생 략)	2. ~ 14.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30조의7(핵심장치등의 안전성
	확인) 자동차제작자등 및 부품
	제작자등(이하 "자동차 및 부
	품 제작자등"이라 한다)은 제3
	0조 및 제30조의2에도 불구하
	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하"핵심장치등"이라 한
	다)에 관하여는 각각 제29조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
	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등"이라 한다)
	에 적합함을 국토교통부장관으

~ ① (생 략) <신 설>

제3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①~③ (생략)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 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에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동차제 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 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해당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⑤ (생략)

로부터 확인(이하 "안전성확인" 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 (13) (현행과 같음)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의 7에 따라 안전성확인을 받은 핵심장치등 또는 구동축전지의 주요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관 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3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①~③ (현행과 같음)

-----부품제작자등(핵심 장치등을 포함한 모든 부품의 제작자를 포함한다)----------부품제작자등(핵심 장치등을 포함한 모든 부품의 제작자를 포함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 ⑤ (현행과 같음)